

2023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1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3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 ☐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접근성을 향상하면서,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하고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국내 생산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대·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도 개요

☐ 제 도 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지원추진
- * 조달청 : 역량강화과제 지원 추진

☐ 목 적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및 공급 제품의 품질 제고를 지원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지원
 - (혁신성장과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
 - (소재부품과제)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유도
 - (역량강화과제) 중소기업의 기술 및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 조달청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 참여대상

- (주관기업) 제도에 참여하여 협력기업과 협업을 통해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상생협력제품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공사 전체를 의미
- (협력기업) 주관기업과 협업하여 상생협력제품을 위탁받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직접 생산하여 주관기업에 제공하는 기업

☐ 우대사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관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
 - * 선정 기업 및 제품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시 입찰 가점,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 우대, 제품 홍보를 통해 원활한 판로 진출을 지원

- ① 협업에 의한 생산품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충족을 인정하는 혜택 부여
 -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심사기준에서 신인도 가점 부여
 - ③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성과 반영
 - ④ 참여기업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종합심사 낙찰제** 등 공사입찰 시 가점 부여, 참여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반영(조달청 과제)
- * PQ : 입찰 전에 건설사를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종합심사낙찰제 : 공사수행능력·입찰금액·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
 *** 동반성장평가: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세부지표 중 하나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 ⑥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제도 신청자격 부여
 - ⑦ 공공기관 대상 구매상담회, 제품전시회 참여 지원

2. 지원 과제

※ 공고문 '6. 과제별 지원내용' 확인

□ 지원유형별 과제

- **혁신성장과제**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참여자격** : (주관) 중소기업 / (협력) 중소기업이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 * 혁신성장과제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최대 3개까지 상생협약 체결 가능
 - **신청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제 2023-7호에 따름 (공고일 현재 기준)
- **소재부품과제** : 소재·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조달시장 판로를 지원하는 과제
 - * 소재부품과제의 협력기업으로 대기업이 참여 가능하며(중소기업과 2:1의 협력 형태로 참여 가능), 소재·부품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간접 진출 가능

- 참여자격 : (주관) 중소기업 / (협력)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고, 소재부품기업 확인서, 국가연구개발 성공판정 서류(5년 이내), 특허 등록(7년 이내) 중 1개 보유
- 신청제품 : G2B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 **역량강화과제**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과제 (공공 시설공사 분야)

- 참여자격 : (주관) 중소건설기업 / (협력) 대형건설기업,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할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3자 협약은 공공기관 참여 가능)
- 신청제품 : 시설공사

○ **과제별 요약**

구 분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역량강화과제
기업 자격	주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건설기업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거나 건설업 면허가 없으나 융복합 건설기술 활성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협력기업	중소기업 * 생산설비, 기술, 품질, 인력 등 지원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 소재·부품 공급	대형건설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3자 협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참여가능
신청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G2B 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시설공사
협력기업 보유자격 (中 1개 보유)		신청제품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① 소재부품기업확인서 ② R&D사업 성공 소재부품 ③ 특허 적용 소재부품	① 종합건설업 면허 ② 전문건설업 면허 * 건설업 면허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모델명 및 제품규격		- 신청제품은 모델명, 규격 특정 필요 (제도 선정 후 모델명 기준으로 구매실적 인정)		
우대사항		① (혁신성장)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해 주관기업이 협력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활용 ② (역량강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종합심사낙찰제 등 공사입찰 시 가점 부여 ③ (공통)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 시 입찰가점 부여 ④ (공통) 상생협력제품 구매실적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⑤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⑥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제도 신청자격 부여 ⑦ (공통) 공공기관 대상 구매상담회, 제품전시회		

3. 상생협력 체결 및 유의사항

□ 협약체결 및 내용

- 제도에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단체)과 협력기업은 신청 전에 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생협력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기간 동안 상생협약을 유지하여야 함
- 협약 체결시 다음사항을 상생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상생협약서 포함 내용	①	협약 당사자의 지위,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책임, 권한
	②	상생협력 지원분야
	③	공공조달시장 납품시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참여비중
	④	단계별 상생협력 추진계획 및 성과 목표
	⑤	협약 당사자간 이행 사항
	⑥	협약 당사자간 공정성 유지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 사항
	⑦	상생협력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⑧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 협약체결시 의무사항

- 상생협약 체결 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 규정 확인 후 상호 간 충분히 협의, 역량강화과제는 「공공 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확인하고 협의
- 협약 당사자는 협약내용에 대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력기업은 주관기관의 경영 간섭은 불가함

□ 참여 유의사항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3(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따른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 참여기업은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여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해당 여부를 증명
- 주관기업은 동일 세부분명번호(10자리)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당사자는 주관기업이어야 하며, 선정되고 입찰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납품금액 중 협력기업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함(역량강화과제 해당없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4. 26 (수) ~ 5. 26 (금)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을 통한 온라인 (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상생협력제도 신청) 접속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서류작성 및 신청방법 등 제도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신 중소기업은 연락 바랍니다.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문의 ☎ 042-712-5631~6,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역량강화과제 문의 ☎ 042-724-6147, 조달청 시설총괄과)

□ 추진일정

구 분	신청·접수	평가·선정	계약 및 납품
1차 공고	'23. 4.26 ~ '23. 5.26	23년 6월	수요 발생 시 (상생협력제도 지원기간 내)
2차 공고	'23년 7월 예정	'23년 8월 예정	
3차 공고	'23년 10월 예정	'23년 11월 예정	

* 상기 추진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 및 안내

□ 안내 및 문의

구 분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 화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과제 접수, 평가 등	☎ 042-712-5631~6
역량강화과제	조달청 시설총괄과	과제 접수, 평가 등	☎ 042-724-6147

□ 홈페이지 안내

구 분	사이트명	주 소
상생협력제도 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제도신청 - 상생협력제도 신청)
제도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mss.go.kr (사업공고)
과제 운영 (역량강화과제)	조달청	http://www.pps.go.kr (사업공고 및 운영)

6. 과제별 지원내용

가 혁신성장과제

□ 지원개요

-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기업 자격	주관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력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제품 관련 「판로 지원법」 제9조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기업
신청제품 관련 자격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10자리) 기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 고시 제2022-24호에 따름 (공고일 현재 기준)
협약조건		○ 신청 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은 중소기업간 1:1로만 협약 가능

□ 상생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주관기업의 제품생산을 위해 다음의 지원사항을 상생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지원 사항	설비 지원	기술 지원	품질 지원	인력 지원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업은 아래 평가지표 관련 내용이 상세히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 평가지표

구 분	혁신성장과제 대면평가 지표 (배점)	
혁신성	제품의 기술수준(25)	기존 제품 대비 우월성(20)
공공성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등 공공성(20)	
기대효과	기대효과(20)	
기타	상생협력 필요성(10)	지원의지(5)

□ 선정 시 우대사항

- **직접생산확인기준 인정** : 주관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협력기업과 협업하는 경우 증명서 발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조달시장 진출 가능(협력기업의 유효기간 동일)
* 관련근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9조 제3항
- **입찰가점 부여** :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입찰 참여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 상생협력제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 성과 포함
- **시범구매제도 / 성능인증제도 신청자격 부여** : 상생협력제품은 시범구매제도 및 성능인증(EPC)제도 신청 가능 대상제품 자격 부여

나 소재·부품과제

□ 지원개요

- 대기업 혹은 소재·부품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를 지원하는 과제

□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기업 자격	주관 기업	○ 주관기업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table><tr><td></td><td>기업 구분</td></tr><tr><td>①</td><td>「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td></tr><tr><td>②</td><td>「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제3호 따른 각급 조합</td></tr></table>		기업 구분	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제3호 따른 각급 조합				
		기업 구분										
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제3호 따른 각급 조합											
	협력 기업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table><tr><td></td><td>기업 구분</td></tr><tr><td>①</td><td>「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가 유효한 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td></tr><tr><td>②</td><td>「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서가 유효한 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td></tr><tr><td>③</td><td>「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 보유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td></tr><tr><td>④</td><td>등록된 지 7년 이내 특허가 적용된 소재·부품 보유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등록이 유효한 특허에 한함)</td></tr></table>		기업 구분	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가 유효한 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②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서가 유효한 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③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 보유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④	등록된 지 7년 이내 특허가 적용된 소재·부품 보유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등록이 유효한 특허에 한함)
	기업 구분											
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가 유효한 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②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서가 유효한 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③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 보유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④	등록된 지 7년 이내 특허가 적용된 소재·부품 보유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등록이 유효한 특허에 한함)											
신청제품 자격		○ G2B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주관기업이 협력기업의 소재·부품을 적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 (세부품명) http://www.g2b.go.kr:8051/search/classificationSearch.do										
협약조건		○ 신청 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 - (주관 중소기업-협력 중소기업 참여) 1개 이상:1개 - (주관 중소기업-협력 대기업간 참여) 2개 이상:1개										

□ 상생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 소재·부품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협약 대상 주관기업 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원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지원 사항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지원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	핵심 기술의 지원	품질 향상 지원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 소재부품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업은 아래 평가지표 관련 내용이 상세히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 평가지표

구 분	소재·부품과제 대면평가 지표 (배점)	
소재부품국산화	소재부품의 중요성(25)	국산화 기대효과(20)
혁신성	기존 제품 대비 우월성(20)	
공공성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등 공공성(20)	
기타	상생협력 필요성(10)	지원의지(5)

☐ 선정 시 우대사항

- **입찰가점 부여** :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입찰 참여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 상생협력제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 성과 포함
- **시범구매제도 / 성능인증제도 신청자격 부여** : 상생협력제품은 시범구매제도 및 성능인증(EPC)제도 신청 가능 대상제품 자격 부여

다 역량강화과제

☐ 지원개요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품질·안전 등 공사관리와 시공기술 및 계약관리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과제

☐ 신청자격

- **협약 유형** : ①주관기업과 협력기업 간 협약, ② 주관기업, 협력기업과 공공기관 간 3자 협약

- 역량강화과제에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기업, 3자 협약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하여야 함

구 분		신 청 자 격						
기업 자격	주관기업 (성장희망 기업)	○ 주관기업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table><tr><td></td><td>기업 구분</td></tr><tr><td>①</td><td>「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기업</td></tr><tr><td>②</td><td>「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평가위원회에서 융·복합 건설기술 활성화 등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td></tr></table>		기업 구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평가위원회에서 융·복합 건설기술 활성화 등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
		기업 구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평가위원회에서 융·복합 건설기술 활성화 등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							
	협력기업 (성장지원 기업)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table><tr><td></td><td>기업 구분</td></tr><tr><td>①</td><td>중소기업 외 기업</td></tr><tr><td>②</td><td>중소기업 중 조달청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td></tr></table>		기업 구분	①	중소기업 외 기업	②	중소기업 중 조달청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기업 구분							
①	중소기업 외 기업							
②	중소기업 중 조달청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공공 기관 자격	공공기관 (3자 협약인 경우만 해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협약조건		○ 참여기업은 최소 2개 이상의 지원사항을 선정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하나의 협력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력기업은 최대 다섯 개 주관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중소기업-중소기업 참여) 최대 5개 중소기업:1개 중소기업(협력기업) - (중소기업-대기업 참여) 최대 5개 중소기업:1개 대기업(협력기업) ○ 주관기업, 협력기업과 공공기관 간 3자 협약의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어야 함						

□ 상생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 역량강화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협약 대상 주관기업의 공사 관리능력, 계약관리 능력, 기술개발능력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지원사항 중 2개 이상을 상생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지원 사항	공사관리 능력	재무관리 능력	계약관리 능력
	기타 기술개발 능력 등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 역량강화과제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주관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협력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소 등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관리 및 점검 이행
-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업은 아래 평가지표 관련 내용이 상세히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 평가지표

구 분	역량강화과제 평가 지표		
협약내용	내용 적정성	이행 충실도	기업 활용도
	목표 달성도	목표 도전성	이행 노력도
협약성과	재무성과 향상정도		성장성 향상정도
	일자리 창출정도		협약성과 지표(기업이 제출)

□ 우대사항

- 역량강화과제 참여자는 매년 협약이행 실적을 평가받아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의 우대사항 부여
 - **입찰가점 부여** : 종합심사낙찰제(사회적 책임), PQ(신인도)에서 입찰 가점 및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시 가점 혜택
 - **조달청장 표창 수여** : 활동우수 주관 및 협력기업과 임·직원 대상
 -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 동반성장평가의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세부지표 중 하나인 '대·중소 건설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지원 노력'으로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6. 추진절차 및 기타 유의사항

□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평가 및 선정절차

- 주관기업, 협력기업 및 제품에 대해 신청·접수, 대면평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

<상생협력 지원제도 평가 및 선정 절차>

구 분	관련내용	수행기관
신청·접수	- 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 신청 (공통 서류와 과제별 서류 확인하여 온라인 제출)	주관기업
↓		
자격검토	- 신청서류 및 자격 적합 여부를 검토 (상생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등)	중소기업유통센터
↓		
대면평가	- 6인 이내 평가위원 구성하여 평가, 70점 이상 적합 - 신청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대면평가위원회
↓		
지원대상 심의	- 8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및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 확정	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결과통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게 결과를 통보	중소기업유통센터

* 지원대상 선정 다음 연도 말에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연장 또는 완료평가 실시

□ (역량강화과제) 평가 및 선정 절차

- 주관기업, 협력기업에 대해 신청·접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

<상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및 선정 절차>

구 분	관련내용	수행기관
신청·접수	- 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 신청 (공통 서류와 과제별 서류 확인하여 온라인 제출)	주관기업
↓		
자격검토	- 신청서류 및 자격 적합 여부를 검토 (신청서, 상생협약서, 세부이행계획서 등)	조달청
↓		
심의	- 10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대상 확정	평가위원회 (조달청)
↓		
결과통보	- 심의를 통한 승인, 불승인, 보완 등 검토결과를 통보	조달청

* 역량강화과제의 선정, 평가, 지원기간, 자격검토 등은 조달청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따름 (조달청 시설총괄과 문의, 042-724-6147)

□ 지원기간

-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의 지원기간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나 선정 평가·심의시 지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성과가 우수하고, 주관기업에 대한 협력기업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 연장은 지원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평가를 거쳐 결정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품분야 또는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로 구분하여 다른 제품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지원대상별로 지원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제도 혜택으로 인해 시장지배적 현상 발생시 공공조달시장 규모와 주관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이 단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선정 후 해당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비경쟁제품으로 분류되어 일반 경쟁입찰에 참여함

□ 신청서류 및 자격검토 관련

- 전담기관은 상생협약서 내용에 계약당사자의 불이익을 강제하는 등 불평등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거나 상생협력 지원내용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자격검토까지 SMPP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류 및 근거자료는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사후 보완을 통한 재평가 불가) (붙임1 참고)
- 신청하는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은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서류 검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 발견 시 주관부처가 선정 취소
 - * 신청제한 시 온라인상 차단할 수 있으며, 제외 사유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참여기업이 부도 처리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주관기업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서류 및 자격검토시 확인자료>

구 분	내 용	확인자료
기 업	중소기업, 소기업 확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중소기업, 소기업 확인 (접수마감일 기준)
체납정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 홈택스(국세), 정부24(지방세) 발급 서류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직접생산	직접생산확인서 보유 기준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발급 확인 (접수마감일 기준)

□ 이의신청 관련

-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 중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공문증빙서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 기타 유의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제도에 참여하고자하는 경우, 조달 입찰참가 자격 등을 사전 검토하고 신청 (예시 : 레미콘 → (업종)레미콘업 → 레미콘협동조합 가입)
- 선정 다음 연도 말에 중간평가를 수행하며, '중단'으로 판단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효력을 중단
-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기간 내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한 기업 또는 위반자 등에 대해 운영요령 제39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주관기업, 협력기업의 개요, 상생협력 지원분야, 성과목표 및 실적 등 비밀유지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내용 공개 가능
- 상생협력제품 선정에 따른 우대사항은 상생협력제품 확인서에 기재된 제품 및 규격에 한하여 적용
 - * 공공기관 납품규격을 확인하여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이 필요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을 따르며, 역량강화과제의 경우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적용

7. 제출 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신청 필수서류

신 청 서 류		비 고
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1부		필수
②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사업계획서 1부		필수
③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상생협약서 1부		필수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본, 개인 정보 이용 및 신청 동의서 1부		필수 (주관기업, 협력기업 각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생략 가능
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필수
혁신성장 과제	⑥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 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재부품 과제	⑦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 서류
	⑧ 소재부품과제 제품 개발계획서 1부	주관기업별 각 1부(주관기업 다수 시)
역량강화 과제	①, ③ 신청서류 및 세부이행계획서 1부	필수

나 평가 가점서류

□ 가점확인 서류 : 해당시 제출

신 청 서 류		비 고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각1부		해당시 : 고용 우수기업 가점 검토
○ 수출실적증명서(직전년도, 전전년도) 각 1부		소재부품과제 신청 협력기업
○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각 1부		해당시 : 기술개발제품 해당여부 가점 검토
가 점 확 인	■ 창업기업은 설립연월일 확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의 업력 산정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고용 우수기업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수출 우수기업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발급기관이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확인 ■ 기술개발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 내 해당여부 확인 (붙임2 참고)	

□ 신청자격 관련 서류 제출 기준 참고자료

구 분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인정기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	- 전담기관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발급 확인 - 신청제품과 동일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인정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 기준)	접수마감일 기준
소재부품과제 협력기업	- 소재부품기업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 사본 - 소재부품기업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공 판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에서 확인되는 사업 - 소재부품과제의 경우 소재·부품기업이 주관하여 추진한 사업에 한함 - 성공 판정 기준은 협약 종료(또는 최종 완료보고된) 과제이며, 지원 중인 과제는 불가 -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부처 또는 관련기관(전문기관)의 성공판정 공문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 등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특허 적용 소재·부품 기업	- 등록 7년 이내 특허증, 등록원부, 공보 등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명의 특허만 인정(개인명의 불가)) - 신청기업이 특허권리를 단독으로 확보한 경우여야 하며, 전용 실시권 등으로 인해 공공조달이 제한되는 경우 불인정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건설업 면허 보유	- 전담기관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정보를 확인함 (별도 서류 제출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접수마감일 기준

연번	인증명	제출서류	유효기간
1	성능인증	- 성능인증서	인증기간 내
2	우수조달물품	- 우수제품지정증서	지정기간 내
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GS 1등급)	-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4	신제품(NEP)	- 신제품인증서	유효기간 내
5	신기술(NET) 적용 성공확인 제품	- 신기술인증서 -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또는 주무부처 확인 공문	유효기간 내
6	우수조달공동상표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	지정기간 내
7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 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성공판정 공문)	최초 계약 후 3년 이내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성공판정 공문)	최초 계약 후 3년 이내
		- 성과공유기술개발(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
8	혁신제품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혁신시제품 지정증서 -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확인서	유효기간 내
9	녹색기술인증제품	- 녹색기술인증제품 확인서	유효기간 내
10	산업융합품목	- 산업융합 품목 확인서	유효기간 내
1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12	물산업 우수제품	- 우수제품 등 지정서	지정기간 내
13	재난안전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유효기간 내